

## 참고 마스크 발송 예외허용 기준 관련 Q&A(ver. 7)

### Q1. 우편물로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가 왜 수출금지 대상인가요?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수출금지) 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2020. 3. 6.부터 수출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개정('20.6.1.)으로 2020. 6. 1.부터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 “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은 「관세법」 제 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에 따라 정식 수출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우편물로 발송 하실 수 없습니다.

### Q2.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허용 규정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출금지 예외조항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한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금지 예외가 적용되나,
- 개인의 경우 수출금지 예외 사전승인 등 수출절차 이행이 사실상 곤란하고, 정식 수출신고서 사전준비(개인통관고유부호, 신고인부호 발급) 및 수출신고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어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제우편물 접수시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 관계 등 우체국에서 간편확인 절차를 거쳐 국제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 Q3.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된 것인가요?

-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면마스크 등)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서 정한 수출제한 품목이 아닙니다.
- 수출금지 대상 마스크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에서 마스크 제품명을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4. 마스크 예외허용 기준 수량이 월 12매까지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적판매처 구매가능수량(주 3매) 기준을 준용하여 예외허용 가능 최대 수량이 월 12매(수취인 중복불가)로 제한된 것입니다.(5.18.개선)
- 마스크 예외허용 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에는 합산 적용됩니다.
- 단, 5월 1일(금)부터 3개월분을 미리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Q5. 마스크 최대 발송 가능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 5월 1일부터 수취인 기준 최대 3개월 분을 발송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발송 가능 수량이 개선되어 최대 36매(월 12매 \* 3월)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에 가족 2명 거주시 : 최대 72매 발송 가능(36\*2)
  - 동일 주소지에 가족 5명 거주시 : 최대 180매 발송 가능(36\*5)

**Q6. 5월 18일 이전 마스크 3개월분(24매)을 발송한 경우에 개선된 내용에 따라 12매를 추가로 발송 할 수 있나요?**

- 네. 발송 가능 수량 확대에 따른 3개월분의 잔여 수량(12매)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Q7. 가족의 인정범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및 발송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를 가족으로 인정하며(4. 9. 개선)
-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5. 18. 개선)
- (확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6. 25. 개선)
  -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 (증빙서류) 발송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과 수취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시 필요
  - 가족관계 확인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증빙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것만 인정합니다.
  - 수취인이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자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가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와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자세한 사항은 Q8~Q11 참조)

**Q8.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 또는 이러한 국적상실자의 자녀, 손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도 “국적상실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예시]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민 후 다른 국가의 국적(예: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
- ② 일본 특별영주권자로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 ③ 1930~40년대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의 또는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
- ④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Q9. 해외에 있는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인 경우, 마스크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1) 해외거주 가족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2008.1.1.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 (발급 방법) ①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② 방문 발급: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또는 ③ 무인증명서 발급
  - 2) 해외거주 가족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 ①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② 해당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류

- ①의 서류로 국내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국적상실자 가족간 가족관계 확인 후, ②의 서류로 해외의 국적상실자 가족과 해당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간 가족관계 확인 필요

- ②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서류 원본의 사진 촬영본도 인정)  
· 해당 서류에 가족 구성원의 성명이 영문 알파벳으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에 대한 번역공증 및 번역공증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도 필요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문서 발행국가의 권한당국(예: 외교부, 법무부 등)이 해당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와 이 문서를 사용할 국가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확인: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해외거주 가족이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인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 +82) 02-6283-0476, 0477

**Q10.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 및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결혼이민자 확인 서류”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1)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발송인과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귀화하였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2)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신고증)
- 결혼이민자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또는 여권 상 비자 체류자격(F-6-1) 또는 한국국적의 배우자가 확인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 :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서류 원본의 사진 촬영본도 인정)

☞ 아포스티유 확인은 Q9 하단 참조

**Q11.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이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별 사정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 간 마스크의 국제우편발송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는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외의 한인회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 승인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Q12.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상자에 담아 발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예외적용기준 마스크 수량을 건별로 확인(포장된 박스의 중량, 수량 검증 등) 곤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득이 단일 품목으로만 포장을 제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수출제한 마스크(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이외 동봉 불가품목에 면마스크도 포함되나요?**

- 네. 수출제한 마스크(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이외 면마스크를 포함한 다른 물품은 어떠한 품목도 함께 발송이 불가합니다.
  - 예외적용기준 마스크 수량을 건별로 확인(포장된 박스의 중량, 수량 검증 등) 곤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득이 단일 품목으로만 포장을 제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 면마스크나 필터교체형 마스크도 한상자에 별도 포장해서 보내야 하나요?**

- 수출제한 대상인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제외한 물품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Q15. 예외허용 기준 수량 초과 등 발송 기준 위반 우편물이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외로 발송전에 통관 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 등 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우편물이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반송시 우편요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EMS 프리미엄 우편물 포함)

**Q16. 해외거주 수취인(가족)이 동일주소지의 같은 집에 여러명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한상자에 함께 발송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함께 발송할 수 없으나, 수취인별 마스크 수량을 모두 신고하고 수취인 기준 수량(월 12매)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접수정보 입력시 수취인명은 가족 중 대표 수취인(1명)으로 기재하고, 내용품명에는 수취인별 마스크 내역 각각 기재
  - 예) 해외거주 자녀 3명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 수취인명은 자녀 중 대표 1명(Hong Onedong)으로 기재, 내용품명은 ‘Family Mask(Hong Onedong) 12’, ‘Family Mask(Hong Idong) 12’, ‘Family Mask(Hong Samdong) 12’ 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마스크 24매를 한 상자에 포장해서 발송
- 동일 주소지로 여러 명의 마스크 발송 시 총 수량만 기재하고 내용품명에 수취인별 별도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 예외허용 기준 미충족으로 우편물이 반송 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추후 해외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17.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우체국에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니오 접수시 가족관계 여부 확인만 하고,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Q18. 발송인을 대신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요?**

- 네. 발송인의 가족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하며, 발송인과 대리접수자 간의 가족관계서류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 예)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접수하는 경우
  - ☞ 할아버지와 손자(조카)와의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할아버지와 삼촌간의 가족관계확인서류,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제시하고, 우편물 접수 정보는 발송인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Q19. EMS접수중단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없나요?**

- 우체국 EMS로 접수할 수 없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5월 6일(수)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UPS社 제휴)를 이용하여 발송 가능하며, 우체국을 방문하여 기표지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예외 허용 접수 기준은 EMS와 동일합니다.(스마트 접수는 불가)

**Q20. 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요?**

-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1. EMS와 EMS프리미엄 접수가능 국가(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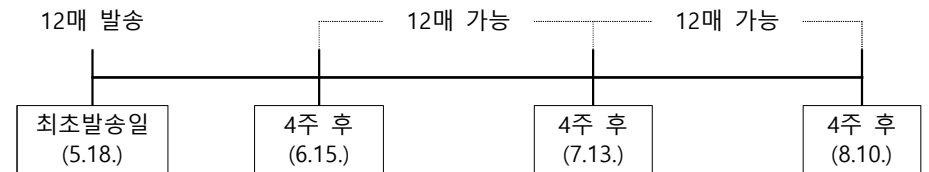
- (4월 28일 현재) EMS는 19개 국가(지역)에 대해 접수가능하며, EMS프리미엄은 188개 국가(지역)이 가능합니다. 접수가능 국가(지역) 및 국가별 특이사항은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UP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배송 상황은 어떠한가요?**

- 상대국가의 조치 등에 따라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연배달, 우편함 투함·출입문 앞 보관 등 비대면 배달(무서명배달) 및 아파트사무실 등 다른 장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점·관공서 등이 폐쇄된 경우에는 배달시도를 하지 않거나 1회 배달시도 후 즉시 반송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3. 마스크 재발송 가능 시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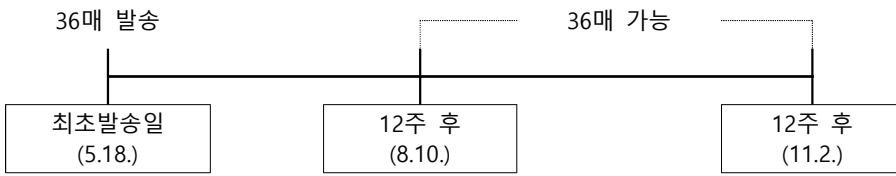
- (1개월분(12매) 발송시)
  -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 다음 발송가능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첫 영업일에 접수 가능

○ (3개월분(36매) 발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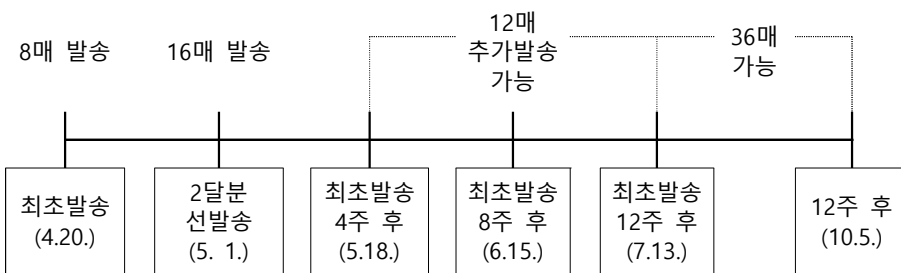
-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 다음 발송가능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첫 영업일에 접수 가능

○ (4월 중 1개월분(8매), 5월 1일 2개월분(16매) 발송시)

- 5월 18일 이전 24매를 발송한 경우 5월 18일 이후 12매를 추가 발송 (최초 발송(접수)일로부터 12주 이내에만 가능)할 수 있으며,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3개월분을 재발송 가능합니다.



- 4월 20일 마스크 8매(1개월분)를 발송하고, 4주 경과 전인 5월 1일 마스크 16매(2개월분)를 발송한 경우, 당초 차후(5월 18일, 6월 15일) 발송해야 하는 마스크를 미리 발송하였기에 최초발송일(4월 20일)로부터 12주 후인 7월 13일에 재발송(차후 3개월분) 가능합니다.
- 또, 5월 18일자로 발송 가능 수량이 확대(월 8매→월 12매)되어, 5월 18일 이전에 발송한 3개월분(24매)의 추가분(12매)은 최초발송일(4월 20일)로부터 12주 이내(7월 12일)에 추가 발송이 가능합니다.